

2011 년도 해외에서 후쿠이현에의 관광객송객조성 실행요약

제정일 2011년 3월 24일

(목적)

제 1 조 이 요령은 중국, 홍콩, 타이완, 한국, 타이 및 싱가포르에서 후쿠이현에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후쿠이현내의 숙박시설에 1박이상 숙박하며 후쿠이현내 관광지·시설을 2곳이상 관광하는 여행을 기획하여 송객 하는 중국, 홍콩, 타이완, 한국, 타이 및 싱가포르의 여행업자에 대하여 송손님수에 응해 교부하는 조성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(조성 대상 사업자)

제 2 조 조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중국, 홍콩, 타이완, 한국, 타이 및 싱가포르에 있어 적법하게 여행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일본에로의 송객을 실시할 수 있는 여행업자로 한다. 또 당사업과 관련되는 사무 연락 등에 대하여 일본어로 충분히 대응 할 수 있을 것.

(조성금의 교부액)

제 3 조

- 1 조성금은 내정 후의 송객수가 20명을 넘었을 때만 교부된다.  
단 예산의범위내로하며 신청 접수순서로 한다.
- 2 조성액은 후쿠이현에로의 송객수로부터 20명을 제외한 인수에 단가 1000엔을 포함 한 금액으로 한다.
- 3 조성액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각각 500엔을 단가에 가산한다. 단 조성 단가의 상한은 2000엔으로 한다.  
·후쿠이현 내에서 2박 이상 한다.  
·일본에의 입국 출국의 어느쪽이든 코마츠 공항을 이용한다.  
·별표로 내거는 시설을 방문한다.
- 4 송객수에는 해외로부터 동행하는 여행가이드는 포함하지 않는다.
- 5 조성금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것(이하 「조성 사업자」라고 한다.)에 교부하는 금액은 1사에 대해 150만엔을 상한으로 한다.

(사업 계획서의 제출등 )

제 4 조 조성 사업자는 사업 계획서(양식 제 1호)에 여행 상품의 여정표를 더해 송객 개시 예정일의 7일전까지 사단법인 후쿠이현 관광 연맹(이하 「연맹」이라고 한다.)에 제출해야 한다.

(교부의 내정과 제한)

제 5 조 연맹은 제 4조에 의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조성금의 교부 및 교부금액의 내정을 실시해 조성 내정 통지서(양식 제 2호)에 의해 조성 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.

(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의 신청)

제 6 조 조성 사업자는 내정을 받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 또는 중지할 때는 사업 내용 변경 신청서(양식 제 3호)를 연맹에 신청해야 한다.

(월례 보고)

제 7 조

- 1 조성 사업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달부터 제 9 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달까지의 사이 매달 15 일까지 지난 달의 송객수를 월차 보고서(양식 제 4 호)에 의해 연맹에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.
- 2 조성 사업자는 전항의 서류를 제출하는대로 지난 달의 송객과 관련되는  
①여정표의 복사 ②여행자 이름 일람표 ③숙박자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(내정의 변경)

제 8 조

- 1 연맹은 조성 사업자에게 사업의 진행 상황등에 대해 조회할 수가 있다. 이 때 조성 사업자는 조회를 받고 나서 10 일 이내로 사업의 진행 상황 이후의 예상등에 대해 회답해야 한다.
- 2 연맹은 전항의 회답 또는 제 6 조에 의한 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를 심사하여 내정을 변경할 수가 있다.
- 3 전항에 규정 할 경우에 내용 변경 통지서(양식 제 5 호)에 따라 조성 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.

(사업의 실적 보고 및 교부 신청등 )

제 9 조

조성 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30 일 이내 또는 2011 년 9 월 30 일까지 교부 신청서 겸 사업 실적 보고서(양식 제 6 호)를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.

(팩시밀리 또는 전자 메일의 이용)

제 10 조

제 4 조 제 6 조 및 제 7 조와 관련되는 조성 사업자의 서류의 제출은 팩시밀리 또는 전자 메일의 첨부 파일로 할 수 있다.

(조성금의 액수의 확정등 )

제 11 조

- 1 연맹은 제 9 조에 의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사업의 실시가 확인되었을 때는 내정을 결정으로 변경하고 교부해야 할 조성금의 금액을 확정시켜 조성금 확정 통지서(양식 제 7 호)에 의해 조성 사업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신속하게 조성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.
- 2 조성금의 교부는 금융기관에 있는 조성 사업자의 외화 계좌등에 엔화기준으로 입금 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 송금 수수료는 조성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불은 조성액으로부터 해당 수수료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.

(조성금의 경리등 )

제 12 조

조성금의 교부를 받은 사업자는 조성금에 드는 경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서류를 선량한 관리하에서 5 년간 보존 해야 한다.

(조성금의 교부의 내정등의 취소 및 반환)

제 13 조

연맹은 조성금의 교부를 받은 사업자가 이 요령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또는 사업 계획서나 교부 신청서등의 제출 서류에 위조의 기재를 했을 때는 조성금의 교부의 내정이나 결정을 취소하여 이미 교부한 조성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가 있다.

(그 외)

제 14 조 이 요령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맹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요령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( 제 3 조 제 3 목덜미 관계)

- |   |
|---|
| <p>① 후쿠이현립 공룡 박물관(후쿠이현 카츠야마시 무라오카쵸 테라오 51-11)<br/>또는<br/>② 오오와다 전자상가(상업지구)<br/>다만 본요령에 있어서의 오오와다 전자상가(상업지구)란 다음의 대형 전기점 5 점포를 말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100 만볼트 후쿠이 본점(후쿠이현 후쿠이시 심보쵸 2-3)</li><li>· (주) 야마다 전기 텍 랜드 후쿠이 오오와다점(후쿠이현 후쿠이시 오와다쵸 33-1)</li><li>· (주) 코지마 NEW 후쿠이 에르파점(후쿠이현 후쿠이시 오와다쵸 30-13-1)</li><li>· 죠신 후쿠이 본점(후쿠이현 후쿠이시 타카야나기쵸 38-28)</li><li>· 케이즈덴키 후쿠이북점(후쿠이현 후쿠이시 타카야나기쵸 28-5)</li></ul> |
|---|